

대전지방법원 2020. 1. 16 선고 2019가단1419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피고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1. 4. 6. 접수 제67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조민혜

별지